(재)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- 021호

「대구-제주 SW융합클러스터2.0사업」

2025년 SW융합 지원사업 통합공고

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 스마트시티 혁신성장과 제주지역 IT/SW기업 성장을 위해 「2025년 SW융합 지원사업 통합공고」를 실시 하오니 제주 IT/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> 2025년 2월 18일 (재)제주테크노파크원장

지원사업 개요

□ 공 고 명: 「2025년 SW융합 지원사업」 통합공고

○ 공고대상: 4개 사업 15개 과제

	사업명	지원규모	사업기간	
1	SW융합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	자유 (도전)	2개 과제 (과제별 60,000천원)	
	SW융합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	제주	2개 과제 (과제별 85,000천원)	
2	SW용합 시미끄 걸등 시원자합	공동협력 (제주-대구)	1개 과제 (120,000천원)	2025. 4. ~ 11.
3	SW 초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원스톱 지원사업	제주	5개 과제 (과제별 30,000천원)	
4	SW융합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	컨설팅	5개 과제	
ت ا		마케팅	(과제별 10,000천원)	

※ 사업별 주관기업으로 중복신청 불가(참여기업으로는 참여 가능)

□ 사업목적

○ 데이터 기반의 SW융합 도시서비스 사업의 확대로 디지털 전환과 지역 SW기업의 비즈니스 구조 다변화

- O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SW융합 新기술・新서비스 창출로 디지털 대 전환 활성화
- O 우수 서비스 실증을 통한 지역 간 서비스 판로확대 및 홍보 효과 증대
- O SW융합 초기기업 아이디어 발굴로 新도시산업 육성 기여

□ 지원 주요내용

사업명	지원분야	지원범위	지원규모
① SW융합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	자유(도전)	 SW융합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관련 제반 비용 지원 인증, 특허 등 제품 신뢰도 확보 관련 제반비용 지원 전시회, 홍보 등 성과 확산 관련 제반 비용 지원 	• 2개 과제 (과제별 60,000천원)
② SW융합 서비스	제주	SW융합 기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실증 관련 제반비용 지원 인증, 특허 등 제품신뢰도 확보	• 2개 과제 (85,000천원)
실증 지원사업	공동협력 (제주-대구)	관련 제반 비용 지원 • 전시회, 홍보 등 성과 확산 관련 제반 비용 지원	• 1개 과제 (120,000천원)
③ SW 초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원스톱 지원사업	제주	•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SW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등 조기 사업화 관련 제반 비용 지원	• 5개 과제 (과제별 30,000천원)
	컨설팅	• 해외시장조사 및 진출을 위한 전문업체 컨설팅 비용 지원	
④ SW융합 해외진출		• 외국어 홍보물(영상) 제작 • 사용자 수요 기반 SW UI/UX 개선 지원	• 5개 과제
패키지 지원사업	마케팅	• 해외 인증 획득 및 특허출원	(과제별 10,000천원)
	(전시회)	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- [100%]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- [80%] 샘플 운송비, 추가 비물 임차비, 통역비 	

[※]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지원사업 세부내용

① 2025년 SW융합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: 2025년 SW융합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

□ 지원내용: 지역 현안(안전, 복지 등) 해결을 위한 SW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

□ 지원기간: 2025. 4. ~ 11.(8개월)

□ 지원분야 및 규모

구 분	지원분야	지원규모	지원기간*
SW융합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	자유(도전)	• 2개 과제(과제별 60,000천원) 내외	2025. 4. ~ 11. (8개월)

^{*}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워대상

- O 주관기업 단독 또는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
 - * (주관)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/SW 중소기업
 - * (참여) ICT/SW 중소기업(2개사 이내)
- 사업자등록증 업종/업태에 하단 표준산업 소분류코드 포함하는 기업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

코드	표준산업 소분류(3digit)
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631	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
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

□ 지원조건

- O 과제별 총사업비의 20%이상 민간부담 의무 매칭(현금은 10% 이상)
 - * 참고 1.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 참고
- 신규고용* 2명 및 지식재산권 1건 이상 획득 의무
 - *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'24. 8. 19. ~) 채용인력 포함가능하며, `25.12월 말까지 채용유지 필수
- 본 사업은 상용화(사업화)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, **사업기간 내 개발** 서비스의 상용화가 필수이며, 주간 및 월별 등 정기적인 진도점검보고서 제출 필요
- O SW서비스 개발 이외 하드웨어 개발은 불가
 - * 단, 하드웨어 적용·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·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사업비(현금)의 20% 이내 산정 가능
- 지원기관(JTP)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(TTA)의 SW품질관리 및 테스트, SW품질 컨설팅 필수(최소 2회)
- 지원기관(JTP)이 지정한 리빙랩 운영 전문기관의 사용성 평가 추진 필수(1회이상/년)
- 과제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 업로드 필수(업로드 범위 협의 후 진행)
- 사업 선정 시, 총 지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(기업 자부담)
- 주관기업은 사업비 내 '일반수용비-위탁정산수수료'를 의무 편성해야 하며, 지원기관(JTP)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검사를 받아야 함

□ 지원제외 사항

- O 신청기업(주관 및 참여기업), 신청기업의 장,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,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
 -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결거절, 부적정"인 경우

2. 선정방법

- □ 선정절차: (1차)서류평가 → (필요시)현장점검→ (2차)발표평가
 - (1차) 서류평가
 -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확인: '적정' 시 2차 평가 진행
 - 객관적 지표(정량지표) 확인: 기업신용도(기업신용평가등급)
 - O (필요시) 현장점검: 사업장 소재지 확인 및 보유인력 현황 확인 등
 - **(2차) 발표평가**: 평가위원회* 개최 ★ 평가위원화: 지원기관(JTP) 사업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5인 이내 구성
 - 사업계획(사업수행 능력 등), 기술성, 상용화 가능성 등 종합평가

□ 평가항목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	평가지표	배점
객관적 지표 (10점)	기업신용 평가등급 (10점)	• 기업 신용도	● 주관기업의 신용평가등급(객관지표) ※ 등급점수기준 기준 A 이상 B- ~ BBB+ CCC+ 이하 배점 10점 1점 ~ 9점 0점	10
		• 목적 부합성	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지역현안을 고려한 기획 적절성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과제 성과 목표의 적절성 추진일정, 산출물의 타당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성과목표의 적절성, 합리성 	20
		• 사업수행능력	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기관별 역할의 적절성경영여건, 의지, 노하우 등 전문성	10
평가 지표 (90점)		• 추진전략 및 체계	• 추진전략 및 체계의 타당성 - 추진전략, 추진체계 적정성 - 조직/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	10
(90 🗗)	기술성 (15점) • 기술성		• 제안서비스 및 과제의 기술적 우수성 - 대체 가능성,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	15
	상용화 가능성	• 사업성	사업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개발 결과의 상용화 시기 및 시장 진입 가능성가격경쟁력, 시장발굴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	20
	(30점)		• 과제 종료 후 응용·지역경제 파급효과 - 현장 적용, 타지역 확산 가능성, 매출 성장, 시장 진입 등	10
	일자리 창출 (5점)	• 일자리 창출	•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도 - 고용의 질적 개선 적절성 및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적정성 -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사회 공헌도	5
			합계	100

^{*} 객관적 지표(정량지표) 확인서류 미제출 시 해당 점수 부여하지 않음



□ 선정기준

O 종합평점*이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고, 우대가점을 적용 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 선정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부수	비고	비고
1	사업계획서	1부	• 붙임1. 사업수행계획서 서식에 맞춰 작성 • 주관 및 참여(해당 시) 직인 날인 필수	필수
2	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서식 1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3	사업자 부담금 확약서	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2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4	수행기관 현물출자 내역표	각 1부	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3</u> 참고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필수
5	지원사업 공동수행확약서 ※ 컨소시움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제출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4</u> 참고	해당시
6	지원 신청·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5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7	확약서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6</u> 참고	필수
8	과제 차별성 검토 조회 결과 및 제재사항 조회 결과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서식 7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, 총괄책임자 해당 	필수
9	평가위원추첨표	1부	• 붙임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8</u> 참고	필수
10	사업자등록증	각 1부	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필수
11	법인등기부등본	각 1부	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필수
12	최근 3년간(`21~`23) 기업재무제표	각 1부	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• 국세청 발급 or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※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	필수
13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1부	• 법인사업자: 기업 및 대표자 모두 제출 • 개인사업자: 대표자 명의 제출	필수
14	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	1부	•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를 통한 발급 ※ 24년 이후 발행 건만 인정	필수
15	고용보험 가입자 명부	1부	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기존 인력보유여부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(http://total.kcomwel.or.kr) ※ 검색기준: '25. 3. 4. ~ '25. 3. 4.(1일) 	필수

- *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별도 구분하여 파일(PDF)로 제출(PDF 일괄 병합하여 제출 불가)
- * 서류는 원본 스캔파일(PDF)을 온라인 등록(기관별 폴더 압축파일 제출)
- * 외부기관 발급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준수

3. 추진일정

	<u> </u>	
통합공고	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	• 통합공고 - 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
과제 접수	2025. 2. 26.(수) ~ 3. 7.(금)	• 과제 접수 기간 - <u>2025. 2. 26.(수) 09:00 ~ 3. 7.(금) 18:00</u>
서류평가	~ 2025. 3. 11.(화)	• 서류평가 및 결과발표: 2025. 3. 11.(화)
(필요시) 현장점검	~ 2025. 3. 13.(목)	• 현장점검: ~ 2025. 3. 13.(목) - 필요시 진행
발표평가	2025. 3. 20.(목) ~ 21.(금)	•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 적정 과제 대상 발표평가 - 2025. 3. 20.(목) ~ 21.(금)
▼ 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	2025. 3. 27.(목)	• 발표평가 결과 통보 및 선정과제 협약 안내
합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	~ 2025. 4. 30.(수)	• JTP-선정과제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• 지원금 청구서류 확인 후 1차 지원금(50%) 지급
사업수행	~2025. 11. 30.	• 과제별 사업수행 -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, 품질관리, 사용성 평가 등
₹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	2025. 8. 21.(목) ~ 22.(금)	•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
2차 지원금 지급	~ 2025. 9. 12.(금)	• 중간평가 결과 '계속' 판정 과제 - 2차 지원금(50%) 지급
▼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	2025. 11. 18.(화) ~ 19.(수)	•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
사업비 정산	~ 2025. 12. 12.(금)	• 위탁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추진 - ~ 2025. 12. 12.(금)

* 상기일정은 지원기관(JTP)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② 2025년 SW융합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: 2025년 SW융합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

□ 지원내용: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 및 전환을 위한 SW융합 기술 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지원

□ 지원기간: 2025. 4. ~ 11.(8개월)

□ 지원분야 및 규모

구 분	지원분야	지원조건	지원규모	실증지역
SW융합	제주	• 제주SW기업	2개 과제 (과제별 85,000천원)	제주
서비스 실증	공동협력 (제주-대구)	• (주관)제주SW기업+(참여)대구SW기업 ※ <u>컨소시엄 필수</u>	1개 과제 (120,000천원)	제주-대구 교차실증

□ 지원대상

- O [제주거점] 주관기업 단독 또는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 [공동협력] 주관(제주) 및 참여(대구) 컨소시엄 구성 필수
 - * (주관) 공고일 기준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/SW 중소기업
 - * (참여) [제주거점] ICT/SW 중소기업 [공동협력] 공고일 기준 본사가 대구광역시 소재 ICT/SW 중소기업
- O 사업자등록증 업종/업태에 하단 표준산업 소분류코드 포함하는 기업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

코드	표준산업 소분류(3digit)		
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	
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	
631	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		
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		

□ 지원조건

- 과제별 총사업비의 20%이상 민간부담 의무매칭(현금은 10% 이상)
 - * 참고 1.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 참고
- 신규고용* 2명 및 지식재산권 1건 이상 획득 의무
 - *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'24. 8. 19. ~) 채용인력 포함가능하며, `25.12월 말까지 채용유지 필수
- 본 사업은 SW융합 서비스 실증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, **사업기간 내**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완료해야 하며, 주간 및 월별 등 정기적인 진도 점검보고서 제출 필요
- O SW서비스 개발 이외 하드웨어 개발은 불가
 - * 단, 하드웨어 적용·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·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사업비(현금)의 20%이내 산정 가능
- 지원기관(JTP)이 지정한 리빙랩 운영 전문기관의 사용성 평가 추진 필수(1회이상/년)
- 사업 선정 시, 총 지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(기업 자부담)
- 주관기업은 사업비 내 '일반수용비-위탁정산수수료'를 의무 편성해야 하며, 지원기관(JTP)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검사를 받아야 함

□ 지원제외 사항

- O 신청기업(주관 및 참여기업), 신청기업의 장,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O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,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
 -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결거절, 부적정" 인 경우

2. 선정방법

- □ 선정절차: (1차)서류평가 → (필요시)현장점검→ (2차)발표평가
 - (1차) 서류평가
 -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확인: '적정' 시 2차 평가 진행
 - O (필요시) 현장점검: 사업장 소재지 확인 및 보유인력 현황 확인 등
 - **(2차) 발표평가**: 평가위원회^{*} 개최 * 평가위원화: 지원기관(JTP) 사업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5인 이내 구성
 - 실증 역량 및 사업이해도, 실증 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평가

□ 선정기준

○ 종합평점*이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고, 우대가점을 적용 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 선정

□ 평가항목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	평가지표	배점
	실증 역량 및	• 실증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	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지역현안을 고려한 기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과제 성과 목표의 적절성 추진일정, 산출물의 타당성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의 적절성, 합리성 	15
	사업이해도 (35점)	• 사업수행능력	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기관별 역할의 적절성기술/인력 보유 현황 및 실증 역량경영여건, 의지, 노하우 등 전문성	10
평가 지표 (100점)		• 추진전략 및 체계	추진전략 및 체계의 타당성추진전략, 추진체계 적정성조직/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	10
	실증 계획의 타당성 (25점)	• 기술성	 제안 서비스 및 과제의 기술적 우수성 대체 가능성,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SW융합 공공서비스 실증 환경의 우수성 (법·제도적 지원) 	25
	실증 가능성 및 파급효과	• 사업성	사업 기간 내 실증 가능성사업 기간 내 실증 완료 및 사업화 가능성수요처 확보 및 가격경쟁력 확보 등 시장발굴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	25
	(40점)	• 성과 파급효과	• 실증 성과 활용·응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- 현장적용 및 타지역 확산 가능성, 매출성장 등	15
합 계 10				

^{*} 객관적 지표(정량지표) 확인서류 미제출 시 해당 점수 부여하지 않음

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부수	비고	
1	사업계획서	1부	• <u>붙임1. 사업수행계획서 서식</u> 에 맞춰 작성 • 주관 및 참여(해당 시) 직인 날인 필수	필수
2	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1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3	사업자 부담금 확약서	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2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4	수행기관 현물출자 내역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3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5	지원사업 공동수행확약서 ※ 컨소시움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제출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4</u> 참고	해당시
6	지원 신청·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5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7	확약서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6</u> 참고	필수
8	과제 차별성 검토 조회 결과 및 제재사항 검색결과	각 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7</u> 참고 • 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, 총괄책임자 해당	필수
9	평가위원추첨표	1부	• 붙임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8</u> 참고	필수
10	사업자등록증	각 1부	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필수
11	법인등기부등본	각 1부	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필수
12	최근 3년간(`21~`23) 기업재무제표	각 1부	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• 국세청 발급 or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※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	필수
13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1부	• 법인사업자: 기업 및 대표자 모두 제출 • 개인사업자: 대표자 명의 제출	필수
14	고용보험 가입자 명부	1부	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기존 인력보유여부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(http://total.kcomwel.or.kr) ※ 검색기준: '25. 3. 4. ~ '25. 3. 4.(1일) 	필수
15	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	1부	• 시험 테스트 결과서(시험성적서), 검증 보고서, 시제품 실물사진 등	필수

- *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별도 구분하여 파일(PDF)로 제출(PDF 일괄 병합하여 제출 불가)
- * 서류는 원본 스캔파일(PDF)을 온라인 등록(기관별 폴더 압축파일 제출)
- * 외부기관 발급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준수

3. 추진일정

통합공고	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	• 통합공고 - 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
과제 접수	2025. 2. 26.(수) ~ 3. 7.(금)	• 과제 접수 기간 - <u>2025. 2. 26.(수) 09:00 ~ 3. 7.(금) 18:00</u>
서류평가	~ 2025. 3. 11.(화)	• 서류평가 및 결과발표: 2025. 3. 11.(화)
(필요시) 현장점검	~ 2025. 3. 13.(목)	• 현장점검: ~ 2025. 3. 13.(목) - 필요시 진행
발표평가	2025. 3. 20.(목) ~ 21.(금)	•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 적정 과제 대상 발표평가 - 2025. 3. 20.(목) ~ 21.(금)
절과통보 및 협약 안내	2025. 3. 27.(목)	• 발표평가 결과 통보 및 선정과제 협약 안내
합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	~ 2025. 4. 30.(수)	• JTP-선정과제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• 지원금 청구서류 확인 후 1차 지원금(50%) 지급
사업수행	~2025. 11. 30.	• 과제별 사업수행 -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, 품질관리, 사용성 평가 등
▼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	2025. 8. 21.(목) ~ 22.(금)	•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
2차 지원금 지급	~ 2025. 9. 12.(금)	• 중간평가 결과 `계속` 판정 과제 - 2차 지원금(50%) 지급
▼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	2025. 11. 18.(화) ~ 19.(수)	•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
사업비 정산	~ 2025. 12. 12.(금)	• 위탁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추진 - ~ 2025. 12. 12.(금)

* 상기일정은 지원기관(JTP)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③ 2025년 SW 초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원스톱 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: 2025년 SW 초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원스톱 지원사업

□ 지원내용: SW제품 및 서비스 기능개선 및 고도화, 시제품 제작 등 제품의 조기 사업화 유도 지원

□ 지원기간: 2025. 4. ~ 11.(8개월)

□ 지원분야 및 규모

구 분	지원분야	지원규모	
SW 초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원스톱 지원사업	제주	• 5개 과제(과제별 3천만 원)	

□ 지워대상

- O 주관기업 단독 또는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
 - (주관)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설립 7년 이내의 ICT/SW 중소기업 * (참여) ICT/SW 중소기업(2개사 이내)
- O 사업자등록증 업종/업태에 하단 표준산업 소분류코드 포함하는 기업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

코드	표준산업 소분류(3digit)
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631	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
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

□ 지원조건

- 과제별 총사업비의 20%이상 민간부담 의무매칭(현금은 10% 이상)
 - * 참고 1.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 참고
- 신규고용* 1명 및 지식재산권 1건 이상 획득 의무
 - *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'24. 8. 19. ~) 채용인력 포함가능하며, `25.12월 말까지 채용유지 필수
- 본 사업은 상용화(사업화)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, **사업기간 내 완제품을** 개발해야 하며, 주간 및 월별 등 정기적인 진도점검보고서 제출 필요
- O SW서비스 개발 이외 하드웨어 개발은 불가함
 - * 단, 하드웨어 적용·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·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사업비(현금)의 20%이내 산정 가능
- 사업 선정 시, 총 지원금에 대한 **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** 필수(기업 자부담)
- 주관기업은 사업비 내 '일반수용비-위탁정산수수료'를 의무 편성해야 하며, 지원기관(JTP)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검사를 받아야 함

□ 지원제외 사항

- O 신청기업(주관 및 참여기업), 신청기업의 장,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O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,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
 -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결거절, 부적정"인 경우

2. 선정방법

- □ 선정절차: (1차)서류평가 → (2차)현장점검 → (3차)발표평가
 - (1차) 서류평가
 -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확인: '적정' 시 2-3차 평가 진행
 - (2차) 현장점검
 - 본사 소재지 확인: 제출서류와 상이할 시 '부적정' 판정함
 - 사업 내용 및 보유 인프라 등 확인
 - **(3차) 발표평가**: 평가위원회^{*} 개최 * 평가위원화 지원기관(JTP) 사업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5인 이내 구성
 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역량, 사업화 및 기술성, 파급효과 등 종합평가

□ 평가항목

구 분	평가항목	내 용		
	사업계획의 구체성 및	•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	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제품 및 기술 개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과제 성과 목표의 적절성 추진일정, 산출물의 타당성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의 적절성, 합리성 	20
	사업 역량 (45점)	• 사업수행능력	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자원(장비, 사업인력)의 전문성 및 보유 여부경영여건, 의지, 노하우 등 전문성	15
평가 지표 (100점)	지표 (100점) 사업화 및 • 사업기술성 (40점) 마급효과 (15점)	• 추진전략 및 체계	추진전략 및 체계의 타당성추진전략, 추진체계 적정성사업 수행 체계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	10
		• 사업성	 과제 수행기간 내 완료 가능성(개발/상용화/고도화) 제품의 시장성 및 수출잠재력 판로개척 가능성 및 적정성 	20
		기술성	신청기업 및 과제의 기술 우수성사업모델 실현가능성	20
		• 일자리 창출	고용현황 및 고용의 질적 개선 실적의 적절성고용확대 계획 목표 설정의 구체성	5
		• 파급효과	• 실증 성과 활용·응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- 국내/외 매출성장, 타지역 확산 가능성 등	10
합 계 10				100

* 객관적 지표(정량지표) 및 우대사항(가점) 확인서류 미제출 시 해당 점수 부여하지 않음

□ 선정기준

○ 종합평점*이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고, 우대가점을 적용 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 선정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부수	비고	
1	사업계획서	1부	• <u>붙임1. 사업수행계획서 서식</u> 에 맞춰 작성 • 주관 및 참여(해당 시) 직인 날인 필수	필수
2	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서식 1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3	사업자 부담금 확약서	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2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4	수행기관 현물출자 내역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3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5	지원사업 공동수행확약서 ※ 컨소시움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제출	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4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해당시
6	지원 신청·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서식 5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7	확약서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6</u> 참고	필수
8	과제 차별성 검토 조회 결과 및 제재사항 검색결과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7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, 총괄책임자 해당 	필수
9	평가위원추첨표	1부	• 붙임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8</u> 참고	필수
10	사업자등록증	각 1부	각 1부 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
11	법인등기부등본	각 1부	각 1부 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
12	최근 3년간(`21~`23) 기업재무제표	각 1부	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국세청 발급 or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	
13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1부 • 법인사업자: 기업 및 대표자 모두 제출 • 개인사업자: 대표자 명의 제출		필수
14	고용보험 가입자 명부	1부	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기존 인력보유여부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(http://total.kcomwel.or.kr) ※ 검색기준: '25. 3. 4. ~ '25. 3. 4.(1일) 	필수

- *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별도 구분하여 파일(PDF)로 제출(PDF 일괄 병합하여 제출 불가)
- * 서류는 원본 스캔파일(PDF)을 온라인 등록(기관별 폴더 압축파일 제출)
- * 외부기관 발급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준수

3. 추진일정

통합공고	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	• 통합공고 - 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
과제 접수	2025. 2. 26.(个) ~ 3. 7.(금)	• 과제 접수 기간 - <u>2025. 2. 26.(수) 09:00 ~ 3. 7.(금) 18:00</u>
서류평가	~ 2025. 3. 11.(空)	• 서류평가 및 결과발표: 2025. 3. 11.(화)
(필요시) 현장점검	~ 2025. 3. 13.(목)	• 현장점검: ~ 2025. 3. 13.(목) - 필요시 진행
발표평가	2025. 3. 20.(목) ~ 21.(금)	•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 적정 과제 대상 발표평가 - 2025. 3. 20.(목) ~ 21.(금)
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	2025. 3. 27.(목)	• 발표평가 결과 통보 및 선정과제 협약 안내
현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	~ 2025. 4. 30.(수)	• JTP-선정과제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• 지원금 청구서류 확인 후 1차 지원금(50%) 지급
사업수행	~2025. 11. 30.	• 과제별 사업수행 -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, 품질관리, 사용성 평가 등
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	2025. 8. 21.(목) ~ 22.(금)	•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
2차 지원금 지급	~ 2025. 9. 12.(금)	• 중간평가 결과 `계속` 판정 과제 - 2차 지원금(50%) 지급
▼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	2025. 11. 18.(화) ~ 19.(수)	•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
사업비 정산	~ 2025. 12. 12.(금)	• 위탁정산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추진 - ~ 2025. 12. 12.(금)

* 상기일정은 지원기관(JTP)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4 2025년 SW융합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: 2025년 SW융합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

□ 지원내용: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전략 등 컨설팅 지원, 전시회 참가 지원,

외국어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

□ 지원기간: 2025. 4. ~ 11.(8개월)

□ 지원분야 및 규모

구 분	지원분야	지원규모*
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	컨설팅	• 5개 과제(과제별 10,000천원) 내외
	마케팅	♥ 3개 피제(피제글 10,000전편) 대되

^{*} 지원규모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워대상

- O 주관기업 및 참여(공급)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
 - * [주관]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/SW 중소기업
 - * [참여(공급)] 지원분야별 과제 수행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
 - * 단, 마케팅(전시회) 분야는 공급기업(해외전시회) 매칭 완료 후 주관기업 단독 신청 가능
- O 사업자등록증 업종/업태에 하단 표준산업 소분류코드 포함하는 기업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

코드	표준산업 소분류(3digit)			
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		
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		
631	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			
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			

□ 지원내용

-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및 마케팅 툴킷 제작 지원
- O 세부지원내용

구 분	지원분야	세부지원내용	결과물
	컨설팅	 기업 현황(자원, 역량, 강·약점 등) 분석 해외진출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자문 (KOICA, KOTRA 지원제도 등) 해외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(대상국 현황, 진출방안, 현지 협력사, 활동가능제도 등) 	• 해외진출지원 제도 제안서
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	외국어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지원 사용자 수요 기반 SW UI/UX 개선 해외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지원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- [100%]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- [80%]샘플 운송비, 추가비품 임차비, 통영		• E-카탈로그 • 홍보영상(국어&외국어) • PCT 출원 등
		• 해외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지원	• 해외인증서
			• 전시회 결과보고서 (상담일지 등 포함)

□ 지원제외 사항

- O 신청기업(주관 및 참여기업), 신청기업의 장,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,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
 -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결거절, 부적정" 인 경우

2. 선정방법

- □ 선정절차: (1차)서류평가 → (필요시)현장점검→ (2차)발표평가
 - (1차) 서류평가
 -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확인: '적정' 시 2차 평가 진행
 - O (필요시) 현장점검: 사업장 소재지 확인 및 보유인력 현황 확인 등
 - (2차) 발표평가: 평가위원회* 개최
 - 필요성, 추진계획의 타당성,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
 - * 평가위원회: 지원기관(JTP) 사업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5인 이내 구성

□ 선정기준

○ 종합평점*이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고, 우대가점을 적용 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 선정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내용			
지원의 필요성 (20점)	• 지원의 필요성	- 지원목적의 명확성, 지원의 필요성 - 주관기업 제품(기술)의 우수성, 개발 및 상용화 능력, 시장경쟁력 등	20	
추진계획의 타당성		- 주관, 참여(공급)기관별 역할의 적절성 - 기술/인력 및 연계자원 보유 현황 -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	30	
(60)	• 사업계획의 구체성, 적정성	- 추진목적의 이해도, 기획의 적절성, 계획의 구체성, 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, 추진일정의 명확성 등	30	
	• 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	- 성과물(산출물)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	10	
기대효과 (20점)	•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적 효과	- 과제 종료 후 응용·지역경제 파급효과(현장적용, 타지역 확산 가능성, 매출성장, 시장진입 등) -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도	10	
합 계 10				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부수	비고	
1	사업계획서	1부	• 붙임1.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 • 주관 및 참여(해당 시) 직인 날인 필수	필수
2	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1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3	지원사업 공동수행협약서 ※ '컨설팅'분야 필수, '마케팅' 분야는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2</u> 참고	필수/ 해당시
4	지원 신청·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	각 1부	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3</u> 참고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	필수
5	확약서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4</u> 참고	필수
6	평가위원추첨표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5</u> 참고	필수
7	제재사항 검색결과	1부	• 붙임2. 기타 제출서류 내 <u>서식 6</u> 참고 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
8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각 1부	부 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
9	고용보험 가입자 명부	1부	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 기존 인력보유여부 확인용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(http://total.kcomwel.or.kr) ※ 검색기준: '25. 3. 4. ~ '25. 3. 4.(1일) 	필수
10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각 1부	• 주관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	
11	2023년 기업재무제표	1부	• 2023년 기업재무제표 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	
12	참여(공급)기업 견적서	1부	• 영상 제작 및 컨설팅 등 견적서 제출	필수

- *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별도 구분하여 파일(PDF)로 제출(PDF 일괄 병합하여 제출 불가)
- * 서류는 원본 스캔파일(PDF)을 온라인 등록(기관별 폴더 압축파일 제출)
- * 외부기관 발급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준수

3. 추진일정

통합공고	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	• 통합공고 - 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
▼		• 과제 접수 기간 - <u>2025. 2. 26.(수) 09:00 ~ 3. 7.(금) 18:00</u>
서류평가	~ 2025. 3. 11.(화)	• 서류평가 및 결과발표: 2025. 3. 11.(화)
(필요시) 현장점검	~ 2025. 3. 13.(목)	• 현장점검: ~ 2025. 3. 13.(목) - 필요시 진행
발표평가	2025. 3. 20.(목) ~ 21.(금)	•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 적정 과제 대상 발표평가 - 2025. 3. 20.(목) ~ 21.(금)
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	2025. 3. 27.(목)	• 발표평가 결과 통보 및 선정과제 협약 안내
협약체결	~ 2025. 4. 30.(수)	• JTP-선정과제 수행기업 간 협약체결
사업수행	~ 2025. 11. 30.	• 과제별 사업수행
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	2025. 11. 18.(화) ~ 19.(수)	•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
지원금 청구 및 지급	~ 2025. 12. 12.(금)	• 지원금 지급요청: 주관기업 → JTP • 지원금 지급: JTP→주관기업→참여(공급)기업

* 상기일정은 지원기관(JTP)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Ⅲ 사업 신청방법

- □ 공고기간: 2025. 2. 18.(화) ~ 3. 7.(금)
- □ 접수기간: 2025. 2. 26.(수) 09:00 ~ 3. 7.(금) 18:00
- □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
 - 주관기업이 하단의 신청방법으로 온라인(제주산업정보서비스) 신청

온라인 신청방법

- (재)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(http://jeis.or.kr)접속
- 대표자(또는 과제책임자) ID/Pass Word로 로그인 (필요시 회원가입)
- 상단 좌측메뉴에서 '지원사업' ❖ '해당사업(접수중)' 클릭 ❖ '사업신청 ' 클릭
- O 상세화면으로 이동 ⇨ 각 항목 입력/저장 ⇨ 제출서류 업로드 ⇨ '등록' 클릭 ※ 신청기한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

□ 문의처

구 분	소	연락처	
과제 관련 문의	JTP 미래산업센터	안소영 연구원	064-720-3733
전산 등록 문의	JTP 기업지원단	이태호 연구원	064-720-3066

IV

서류 작성 안내 및 유의사항

□ 서류 작성 안내

- O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(참여인력, 사업비)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, 특히 사업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중 '[참고 2]비.세목별 사업비 산정기준'을 적용하여 계상
 - * 연구용역비, 일반용역비, 자산취득비 등의 경우 객관적 산정근거 확인을 위한 견적서 등 별도 첨부 요함
 - *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
 - * 사업비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,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 금액의 적정성,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정함
- 사업계획서는 기업 및 개발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고, 기업의 특장점, 사업성, 기술력에 대한 우수성 위주의 작성을 권고함
- O 과제별 정량적·정성적 목표, 결과물, 시제품 등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야 함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
- O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함 (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개정된 규정에 따름)
 - * ①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 관리규정 ②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 관리규정 ③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④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
- 민간부담금(현금) 및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은 협약체결 전까지 납부 및 제출하여야 함 * ¼해외진출 패키지 및 5 규제개선 지원사업'은 해당없음
- 부가가치세(VAT)는 지원대상이 아니며, 수행기업에서 납부해야 함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타사업 또는 타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해지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수혜기업은 협약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위한 증빙 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 의무가 있음
- 세부사업별 주관기업으로 중복신청은 불가, 다만 참여기업으로는 허용
-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기간 및 일부내용을 달리하여 재공고 가능

참고 1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

□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

ㅇ 지원금/민간부담금 비율 기준

기관 유형	지원금 비율	민간부담금 비율
중소기업	총 사업비의 80% 이하	총 사업비의 20% 이상

- *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 -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기관 유형	현금매칭 비율
중소기업	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
< 민간부담금 계산법(예시) >

■ 중소기업이 지원금 100,000천원을 사업비로 받는 경우,

『총 사업비(100%) = 지원금(80%) + 민간부담금(20%)』

① 총 사업비 : 100,000,000원 / 0.8 = 125,000,000원 ② 민간부담금 : 125,000,000원 x 0.2 = 25,000,000원 ③ 민간부담금(현금) : 25,000,000원 x 0.1 = 2,500,000원

총 사업비	지원금	민긴	·부담금(현금+현	[물)
등 시합비	시전급	총계	현금	현물
125,000천원	100,000천원	25,000천원	2,500천원	22,500천원

- * 민간부담금(현금, 현물)은 천원 단위로 올림할 것
 - ㅇ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: 현물부담은 인건비에 한해 매칭 가능
- * (인건비 계상기준)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

[참고] 지원금별 자부담

사업비				
지원금(80%)	자부담(20%)	총사업비		
60,000,000	15,000,000	75,000,000		
85,000,000	21,250,000	106,250,000		
120,000,000	30,000,000	150,000,000		
30,000,000	7,500,000	37,500,000		

	자부담(20%)		
	현금(10%이상)	현물	
7	1,500,000	13,500,000	
7	2,125,000	19,125,000	
	3,000,000	27,000,000	
	750,000	6,750,000	

참고 2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

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

※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,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(이하 "기관 등"이라 한다)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.

비목	세목	적용대상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인건비	보 수	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경쟁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○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× 사업참여을 ① 성과상여금 연봉제 ② 연가보상비 적용기관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(가족수당 등)*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○ 보수인정 8개 항목 × 사업참여을 ① 봉급(기본급여)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(가족수당 등)**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①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⑥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*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여한해 인정(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) **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**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, 명예퇴직수당되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기	©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○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,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○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%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○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객관 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
	상용 임금	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, 전문계약직,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	

비목	세목		적용대상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		구 분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제 미적용기관	세 부 내 용	
	일 용 임금	급여는 9 한해 인기 ** 보수에 : 수규정에 ** 사업과 같이 기계 이 사업수행 인건비	®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청(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)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, 명예퇴직수당과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(위촉직원/아르바이트)의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급하는 강사료	○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○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 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
운영비	일반수용비	 사업수행 사업수행 따른 대기 사업수행 사용료, 사용료, 사용료, 사용료, 사용료, 사용료 	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을 위한 원고료, 번역료,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가 및 사례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, 수수료 및 세미나 참가비 등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근 간식비	 ※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○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○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○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<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> · 필기용구,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·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< 인쇄·유인비 및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> ·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· 현수막 · 간판 등 행사안내, 홍보용 전단및 물품의 제작비 · 간판, 명패, 감사패, 표창, 상패 등의 제작비 < 간행물 등 구입비 > · 신문 · 잡지 · 관보 · 도서 · 팸플릿 전자저널등 정기 · 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< 비품 수선비 > · 책상, 의자, 캐비넷, 전산기기, 복사기, 전화기,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
비목	세목	적용대상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			※ 유·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
			'시설장비유지비'로 편성
			<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>
			·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, 번역료
			및 자문료
			·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(PPT) 등 각종
			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· 연구반,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
			• 현상모집의 상금,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
			대한 사례금
			· 변호료·수임료 및 성공보수
			· 속기·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
			· 대회 등 시상시 상품, 상금
			·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
			※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
			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
			< 공고료 및 광고료 >
			· TV · 신문 ·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
			및 광고료
			<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>
			·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
			표준수수료(부가가치세 포함)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.
			·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
			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.
			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
			• 5천만원 미만 600천원
			•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
			•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,000천원
			•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,500천원
			•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,600천원
			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,800천원
			• 30억원 이상 2,100천원
			<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>
			참여기관 수 가산금
			1개 표준수수료의 10% 1개 기관 추가시
			2개 이상 표준수수료의 5%씩
			가산(2개(15%), 3개(20%))
			· 물품관리위탁수수료, 업무대행수수료
			·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,
			전송금, 우편송금수수료
			· 등기 및 소송료(인지대 및 법정수수료) 등
			·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회계검사수수료
			· 물품의 보관·운송료, 고속도로 통행료, 주차 및
			차고료, 포장비, 상하차비, 선적·하역비
			(※ 다만, 출장관련 통행료, 주차료 등은
			국내여비로 편성)
			→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
			원가조사비 등
			< 교육훈련비 >・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,
			· 사업구행과 식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비다,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
	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
비목	세목	적용대상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		○ 회선사용료, 운송요금,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- 우편요금, 전신(전보) · 전화요금, 모사전송기 등 회선- 사용료 - 철도화물 운송요금 - 전기 · 가스료, 상 · 하수도료, 오물 수기료 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	○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 의 "경비 산정시 참고요금"을 참고 ○ 우편요금·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-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, 전화요금은 회선 수와 단가로 산정
	· 공공 요금 및 제세	○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○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- 법령에 의하여 지불·부담하는 제세(자동차세 포함) 및 국내 부담금,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부담금 -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-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	-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○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○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, 인터넷 납부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※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'무형고정자산'으로 편성 ○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, 집행주체, 분담주체별 분담액, 분담기
	특근 패삭비	○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○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자급 불가	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○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-※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자침」단가 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
	임차료	 ○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, 토지 등의임차료 및 이용료 ○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·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○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○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	○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 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%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(단, 회의장 및 행사장, 장비 임차료 제외) ○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,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(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)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소요 계상 - 다만,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해당 기준 적용 가능 ○ 회의장·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-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,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-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○ 버스·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-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 피한 경우에 계상 ※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'일반수용비'에 계상 ○ 전산장비 및 SW 임차 - 전산장비는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 확안 작성 세부지침」 '정보화사업'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

비목	세목	적용대상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			- ASP(Application Service Provider, 소프
			트웨어 임대서비스), 소프트웨어 라이센
			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
		○ 사업용 시험연구, 실험·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비	○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 여 실소요 비용 산정
		│	이 실험·실습기자재, 시약, 시료구입비
		○ 데이터셋, 가공대상 데이터 등	○ 질립·질립기자세, 시력, 시료기합비 ○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·기구, 선박,
	재료비	0 1 121 0 1 121 0	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
			※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
			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
			비유지비로 산정
		○ 건물 및 건축설비, 공구, 기구,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	○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, 시설 등의
		○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	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
			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자하는 비중에
			따라 산정(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)
			- 다만,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
			해당 기준 적용 가능
			○ 전년도 시설장비유자비 집행 실적을 고려
	사설		하여 반영하되, 적정소요 반영
	장비		○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, 기구, 비품, 기타
	유지비		시설물의 유지보수
			- 건축설비 구축물, 기계장치, 보일러 등 난
			방시설, 및 연료구입
			○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
			○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자
			는 수리,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
			또는 그 이상의 장기가 지속 관리하는 용
			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
		○ 업무용 차량 유류비, 차량정비 유지비, 차량 소모품비·	○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
		등의 소요 비용	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
	유류비		※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 퇴근차량에 대한
			유류비 산정 불가,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
		○ 동호회·연구모임 지원경비	내여비로 편성) ○ 복리후생비 자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
		○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자제도 시행경비	율에 근거하여 산정(현물은 제외)
		○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(창립, 근로자의 날) 선물(기념품)	○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,
		구입비	기숙사, 식당, 채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
		O 생일기념 소액 경비	○ 동아리 등 천목활동 자원비 및 오락비용
			○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
	복라		항목을 반영하여 산정
	후생비		○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
			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※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
			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, 현금 및 상품
			권은 인정하지 않음. 다만, 과도하지 않은
			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
			지급할 수 있음. <개정 2023. 11. 30.>
			○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
		○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구매	○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
	일반	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	되, 행사규모, 전문성 필요 여부, 행사 위탁
	용역비	-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,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, 행사장	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

비목	세목	적용대상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		및 행사장비의 임차,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	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 여 산정
		- 다만,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○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	-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,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
		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 용역비로 계상 ○ 민간위탁사업비, 정책연구비, 일반연구비,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	○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적용 ○ 용역비의 산정은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
		애녕하시 아니아는 할만집수 중역비	정부 회계예규)」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※ 외부에서 '용역비'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'일반수용비'의 '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'에 편성
	관리 용역비	○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,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	이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(전체사업수익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)하되,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-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,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이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적용이단순노무 외주업무(청소, 경비 등)의 예산편성노임단가는 '일용임금 산정단가' 관련기준 준용이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(S/W 유지보수비및 정보시스템 운영비)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「정보화사업」부분을 적용하여 산정이용역비의 산정은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회계예규)」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이 시설장비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, 보수 등 용역에 대한
	기타 운영비	○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,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,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 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	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○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작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※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'일반수용 비'에 편성
	국내 여비	○ 근무지 내 출장 -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)·군 안에 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○ 근무지 외 출장 -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○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	○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※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출장지역·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,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
여비	국외 여비	○ 국외여비 -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-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(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) ○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	○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○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·E-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

비목	세목	적용대상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-17	게ㄱ	7040	한 전 이 전 보 세 T 네 O 한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
			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
			○ 외빈(국외 손님)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,
			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
			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
			※ 국외 손님(외빈)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
			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, 환송 영 행사
			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
		○ 회의비(식대성 경비)	○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
		○ 세미나, 행사,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	- 일반적인 회의, 간담회, 세미나는 참석규모를
		○ 외빈초청 경비, 해외출장 지원 경비,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	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, 해외출장
		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	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
업무	사업	○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	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
추진비	추진비		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
			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
			※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, 개인명의의
			불우이웃돕기 성금, 재해의연금 등 기타
_ 2].=I]s	_ 21.−11s	(2),	갹출성 성금,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
<삭제>	<삭제>	<삭제> ○ 학술, 기술, 평가, 자문, 실태조사, SW개발(감리 포함) 등	<삭제> ○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은
		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	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
			적용하고,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
			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
			-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
			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
			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
			O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, 이를 적
연구	일반		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
용역비	연구비		- 기술용역 단가는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
			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 및 「측량대가의
			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」을 상한으로 편성
			-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「SW사업 대가산정
			가이드」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
			- 기타연구용역은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
			정부 계약예규)」을 적용하여 편성 ※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
			 ** 불편한 대 대조 전경 시 되철자되를 되 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
		○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	○ 자산취득비는 경상적·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
		수 있는 기계기구(부속품 포함) 및 사무집기류 등	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
		○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(H/W, S/W, 네트워크	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
		장비 등) 구입비	- 업무용 PC, 노트북,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
유형	자산	○ 서류함, 책상, 의자, 파타션 등 사무용 집가류의 구입바	적용하여 산정하되,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
" ° 자산	취득비	○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, 수수료 등 부대경비	소요비용을 적용
'-	'' ' '	○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	- 업무용과 실험·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
		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	산정
		용역비로 계상	※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(PC, 노트북,
		○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, 시작품 제작 경비	프린터, 복사가 등)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
		○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	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○ 컨설팅 지원, 수출지원, 사범사업 지원, 실
		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.	증지원,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
민간	민간경	-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	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
이전	상보조	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	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
		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	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

비목	세목	적용대상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		-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	
		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	
		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	
		○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	○ 컨설팅 지원, 수출자원, 사범사업 지원, 실
	민간	아닌 법인 •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	증지원,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
	위탁	의 • 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	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
	사업비		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자원
			하는 금액
	민간자 부보조	○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	○ 민간이 행하는 사무·사업을 조성하거나 자
		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	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
			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자원 하는 금액